

「資料」

上水保護區域 管理指針

1988.8.26 示達(建設部 上水 30340-16716) 된
本 管理指針 가운데 「上水保護區域의 指定基準」에 대
하여는 別途 細部基準을 示達할 때까지 上水保護區域
指定時 判斷資料로 活用토록 하기 바람.

目 次

1. 目 的
2. 上水保護區域의 指定基準
 - 가. 指定原則
 - 나. 取水源別 指定基準
 - 다. 指定의 例外
3. 上水保護區域의 指定節次
 - 가. 指定의 申請
 - 나. 上水保護區域의 指定
 - 다. 指定公告 및 閲覽
 - 라. 地籍告示
 - 마. 指定解除 및 變更
 - 바. 報 告
4. 上水保護區域內 行爲許可 基準
5. 上水保護區域의 管理 및 費用負擔
 - 가. 管理責任
 - 나. 管理費用 負擔
 - 다. 上水保護區域 標識(案內板, 標柱)의 設置
 - 라. 取水施設에 대한 保安施設의 設置
6. 其 他

1. 目 的

- 이 指針은 水道法(이하 “法”이라 한다) 第

3條 및 同法 施行令(이하 “令”이라 한다) 第
3條 내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上水保護 面域
의 指定 및 管理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
으로써 地域住民의 權益을 保護하고 業務의 效
率的 違行과 上水道의 水質汚染을 防止함을 目
的으로 한다.

2. 上水保護區域의 指定基準

가. 指定原則

上水保護區域은 取水源別로 取水施設을 中心
으로 指定하되 當該地域의 流域面積, 地形의 與件,
周圍環境, 上流地域의 土地利用計劃에 의한 汚
染負荷의 變化, 수체, 水系, 隣接 小河川의 水
質汚染度 및 自淨能力, 取水量, 取水目的등을 考
慮하여 水質保護上 必要로 하는 適正한 面域으
로 指定하여야 한다.

나. 取水源別 指定基準

1) 賯水池(湖水包含)

取水口를 기점으로 集水流域分水嶺을 境界로
指定한다. 다만, 賯水量, 賯水面積, 周圍與件,
地形特殊性, 富營養化狀態등을 考慮하여야 한다.

2) 河川表流水(湫流水 包含)

取水口 또는 集水埋渠를 基點으로 河幅, 流量,

隣接小河川등을考慮하여 水質保護에 必要한 河川의 上·下水一定區域과 河川沿岸의 河川境界區域의 周圍與件, 地形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指定한다.

3) 地下水(湧泉水 包含)

取水口를 起點으로 地下深度, 水質, 周圍與件, 隣近土地利用狀態, 上壤의 투수係數, 地層構造, 地下水脈등을 考慮하여 水質保護에 必要한 面積으로 指定한다.

다. 指定의例外

다음의 各號의 경우에는 上水保護區域을 指定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現在 및 將來에 있어 發展可能性이 희박한 山間僻地로서 인적이 드물거나, 將來相當期間 汚染의 우려가 없다고 認定되는 地域
- 2) 地下岩盤水를 取水하는 取水場 周邊으로서 그 地下depth가 깊어 水質污染의 우려가 없다고 認定되는 地域
- 3) 단순한 工業用水用 取水場 또는 周圍與件上 汚染의 우려가 없고 上水保護區域指定의 實益이 없다고 判斷되는 地域

3. 上水保護區域의 指定 節次

가. 指定의申請

1) 上水保護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郡守(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는 別紙 第1號書式에 의한 指定申請書에 다음各號의 書類를添附하여 指定權者(서울特別市, 直轄市 區域인 경우는 建設部長官, 道區域인 경우는 道知事)에게 上水保護區域의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上水保護區域의 指定位置가 國土利用管理法上 自然環境保全地域, 都市地域, 留保地域以外의 地域인 경우에는 自然環境保全地域으로 變更한 後申請하여야 한다.

가) 取水地點, 區域의範圍 및 都市計劃法 또는 國土利用管理法上 用途地域을 表示한 地形圖(1/5,000~1/25,000)

나) 對象區域의 建築物其他 工作物現況 및 隣近地域의 主要 施設物 現況

다) 對象 區域의 地目別 利用 狀態別 土地現況

라) 對象 區域의 行政區域別 土地面積 調書

마) 其他 上水保護區域의 指定 管理에 必要한 事項

2) 水道事業者인 市長·郡守와 上水保護區域을 管轄하는 市長·郡守(이하 “管轄市長·郡守”라 한다. 이하 같다)가 다를 경우에는 水道事業者인 市長·郡守는 管轄市長·郡守에게 上水保護區域指定을 申請해 줄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 이 경우 管轄市長·郡守는 水道事業者인 市長·郡守와 上水保護區域의 指定, 管理 및 費用負擔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協議하고, 그 協議內容 및 第1項의 書類를 作成하여 指定權者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但, 上水保護區域이 2以上의 市·郡에 걸쳐 있을 때에는 水道事業者인 市長·郡守가 管轄 市長·郡守와 協議하여 一括申請할 수 있다.

3) 第2項에 의한 申請要請을 하는 경우 管轄市·道가 서로 다를 때에는 市·道를 經由하여야 한다.

4) 指定對象區域이 서울特別市, 直轄市와 道에 걸치는 경우에는 上水道保護區域指定을 必要로 하는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또는 道知事が 管轄市, 道知事와 第2項에 準하여 必要事項을 協議하고 關係 書類를 作成하거나 提出받아 建設部長官에게 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5) 行政廳이 아닌 水道事業者(法 第26條에 의한 專用水道設置者를 包含한다. 이하 같다)가 上水保護區域의 指定을 必要로 하는 때에는 管轄市長·郡守에게 上水保護區域의 指定申請을 要請할 수 있다. 이 경우 管轄 市長·郡守는 第1項 내지 第4項에 準하여 指定權者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나. 上水保護區域의 指定

1) 上水保護區域 指定申請을 받은 指定權者는 關係 書類 또는 現場確認에 의한妥當性을 檢討確認하고, 水質保護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에 上水保護區域을 指定한다.

2) 指定權者는 上水保護區域의合理的인 指定·management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關係專門家에게 意見을 들을 수 있으며, 區域의範圍등 申請內容에 대하여 關係地方自治團體의 長의 意見을 들어 調整할 수 있다.

다. 指定의 公告 및 閲覽

指定權者が 上水保護區域을 指定한 경우에는 다음 각 號의 事項을 官報, 道報 또는 日刊新聞에 公告하고 그 内容을 管轄 市長·郡守에게 送付하여 一般의 閲覽에 供하게 하여야 한다.

- 1) 上水保護區域의 名稱
- 2) 上水保護區域의 位置, 面積, 區域의 範圍
- 3) 水道事業者の 名稱, 住所
- 4) 其他 必要한 事項

라. 地籍告示

1) 上水保護區域의 指定公告가 있을 때에는 管轄市長·郡守는 그 公告日로부터 6月 以內에 當該區域안의 土地에 대하여 地籍이 表示된 地形圖(1/1,200~1/3,000 임야일 경우 1/3,000 ~ 1/6,000)를 作成하여 指定權者에게 承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다만, 指定權者가 上水保護區域을 指定公告함에 있어 地籍이 明示된 축적 1:5,000 以上의 地形圖面을 使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指定權者가 第1項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地形圖를 指定 公告한 内容과 對照하여 錯誤가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該 圖面을 承認하고, 關係書類 및 圖面을 管轄市長·郡守에게 送付하여야 하며, 管轄市長·郡守는 즉시 地籍을 告示하고 一般의 閲覽에 供하여야 한다.

3) 管轄市長·郡守는 地籍告示後 上水保護區域에 包含된 土地에 대하여 土地利用計劃確認 또는 都市計劃確認申請이 있을 경우 當該土地가 上水保護區域에 該當하는 事實을 表示하여야 한다.

마. 指定解除 및 變更

水道施設의 廢止 또는 上水保護區域으로 管理할 必要가 없어 指定된 上水保護區域을 解除하거나 上水保護區域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 그 節次는 “가” 내지 “라”에 準한다.

다만, 區域全部를 解除하는 경우에는 가項目의 第1項 各號의 添附書類를 省略할 수 있다.

바. 報告

1) 道知事が 上水保護區域을 指定(또는 變更)한 때에는 7月 以內 다음 書類를 添附하여 建設部長官에게 그 内容을 報告하여야 한다.

가) 上水保護區域指定(또는 變更) 事由書

나) 축적 1:25,000 地形圖를 添附한 上水保護區域指定台帳(別紙 第2號書式). 다만, 區域이 廣範圍한 경우에는 축적 1:50,000 以下의 圖面을 添附할 수 있다.

다) 公告文寫本
2) 道知事が 上水保護區域을 指定解除한 때에는 그 公告內容을 즉시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4. 行爲 許可基準

上水保護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郡守는 令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行爲許可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限한다.

市長, 郡守가 行爲許可를 한 때에는 別紙 第3號書式에 의한 許可台帳을 作成 비치하여야 한다.

가. 建築物 其他 工作物의 新築, 改築, 變更 또는 除去가 許容되는 경우

1) 建築物 其他 工作物의 新築 또는 設置

가) 當該區域內 居住하는 住民이 地目上 賃地인 土地에서 延面積 100m² 以下의 農家住宅 및 그 附屬 建築物(33m² 以下)을 新築하는 경우, 다만 水質汚染을 防止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 限한다.

나) 當該 地域住民 福利를 위한 새 마을 會館 또는 公共施設物의 新築, 다만 飲食淨化施設등 水質汚染 防止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 限한다.

다) 其他 水質을 汚染시키지 아니하는 工作物의 設置

2) 建築物 其他 工作物의 改築

汚染物質 發生程度가 종전의 경우보다 惡化되거나 아니하는 範圍안에서의 改築

3) 建築物 其他 工作物의 増築, 變更, 除去의 경우

가) 既存 建築物을 包含한 100m² 以下의 住居用 建築物의 增築(附屬 建築物은 33m² 以下)

나) 建築物을 撤去하거나 其他 上水保護區域指定目的에 反하지 않은 工作物을 除去하는 경우

다) 既存의 施設, 建築物 其他의 工作物의 用途를 종전의 汚染物質 發生程度 以下의 範圍안에서 이를 利用하기 위한 用途로 變更하는 경우

나. 竹木의 裁培 또는 伐採

洪水와 雨期에 현저한 水量變化를 일으키거나
흙탕물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上水保
護區域의 指定目的에 反하지 않는 경우의 裁植
또는 伐採

다. 土地의 掘鑿, 盛土 其他 形質 變更

農耕地 整理를 위한 土地의 形質變更, 上水保
護區域 指定 目的에 反하지 않는 土地의 掘鑿,
盛土 其他 形質變更

5. 上水保護區域의 管理 및 費用負擔

가. 管理 責任

1) 上水保護區域은 管轄市長 郡守가 管理한다.

다만, 管轄 市長, 郡守와 水道事業者인 市長,
郡守間에 保護區域 管理에 關하여 別途 協議가
있는 경우에는 그 協議內容에 따라 管理할 수
있다.

2) 管轄 市長, 郡守는 上水保護區域에서 禁止
行爲 또는 制限行爲를 團束할 수 있도록 必要한
裝備와 人員을 確保하고 監視員으로 하여금 每
日 巡察을 實施하도록 하며 別紙 第4號 書式에
의한 勤務日誌를 作成保管하도록 하여야 한다.

3) 管轄 市長, 郡守는 上水保護區域을 分期別
1回以上 現地 確認하여야 한다.

4) 管轄 市長, 郡守는 別紙 第5號 書式에 의한
上水保護區域內의 既存 建築物 및 工作物 管
理台帳을 作成 備置하여야 한다. (他法令에 의거
上水保護區域 管理에 使用될 수 있는 別途 台帳
이 있을 때에는 이를 準用할 수 있다)

5) 管轄 市長, 郡守는 不法行爲를 적발하거나
水道事業者로부터, 不法行爲가 發生하였음을 通
報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告發 또는 原狀回復
에 必要한 措置를 취하여야 하며, 重要한 措置
事項에 대하여는 그 結果를 道知事에게 報告하
고 水道事業者에 通報하여야 한다.

6) 管轄 市長, 郡守는 上水保護區域 管理業務
從事者에 대하여, 每年 半期別 1回以上 上水保
護區域의 管理에 必要한 事項을 教育하여야 한다.

7) 道知事은 管轄 上水保護區域의 管理狀況에
대하여 年 1回 以上 指導 點檢計劃을 設立하여
現地 確認하고 不法 建築物등의 團束 實態 其他

水質汚染 防止를 위하여 必要한 措置의 履行與
否를 點檢 指導하여야 한다.

나. 管理費用 負擔

1) 管轄 市長, 郡守는 上水保護區域의 指定을
必要로 하는 다른 地方自治團體 또는 水道事業
者가 그 保護管理에 의하여 利益 또는 惠澤을
받는 경우에는 協議하여 그 上水保護區域의 管
理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시
킬 수 있다.

2) 管理費用은 上水保護區域內에서의 行爲團束
에 必要한 人件費, 이를 위한 施設 및 裝備의
運營維持費, 各種 標識의 設置 및 維持管理費,
其他 이와 類似한 性質을 갖는 費用額의 합한
것으로 한다.

3) 上水保護區域內에서의 行爲團束이 다른 法
律에 의하여 管轄市長, 郡守에게 義務가 있는
行爲團束의 機能을 懇하고 있을 때에는 第2項에
의한 管理費用에서 負擔金 一部를 輕減하여야
한다.

4) 上水保護區域의 指定, 管理에 의하여 惠澤을
받는 水道事業者가 管轄 市長, 郡守를 包含
하여 2以上일 때에는 그 費用負擔은 當該 水道
事業者가 각각 取水하는 水量 또는 供給받는 水
量의 比率에 따라 負擔함을 原則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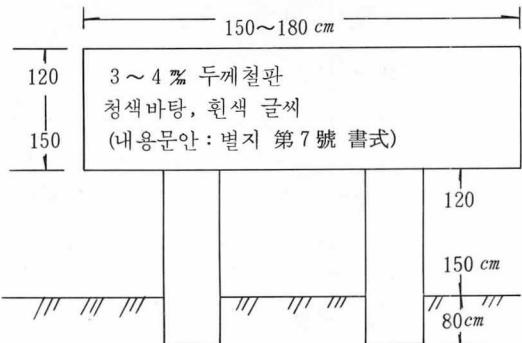
5) 上水保護區域을 管理하는 市長, 郡守가 管
理費用을 負擔시키고자 할 때에는 當該 所要費
用 總額의 明細와 負擔시키고자 하는 金額의 明
細를 作成하여 惠澤을 받는 水道事業者와 協議
하여야 하며,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管轄道知事에게 裁定을 申請하여, 그 決定하는
바에 따르며, 이때 管轄 市, 道가 다른 경우에
는 그 管轄 市, 道가 協議하여야 한다.

6) 第5項에 의한 市, 道 知事間의 協議가 成
立되지 아니하거나 水道事業者가 韓國水資源公
社인 경우에는 建設部 長官에게 裁定을 申請하
여 그 決定하는 바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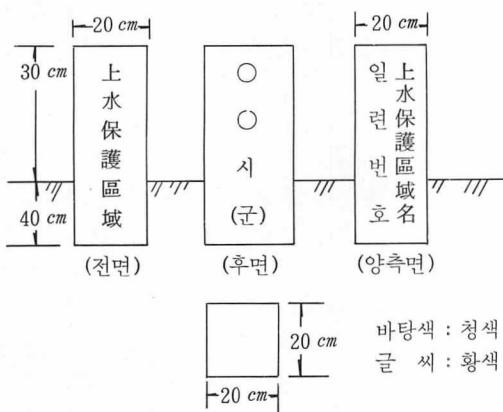
다. 上水保護區域標識(案內板, 標柱)의 設置

1) 管轄 市長, 郡守는 一般人이 上水保護區域
의 範圍와 制限行爲 등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規格으로 案內板과 標柱를 住民 및 一般通
行人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設置하여야 한다.

가) 案内板



나) 標柱



2) 上水保護區域 標識의 設置場所 및 間隔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案内板

① 上水保護區域內 道路邊, 聚落地域, 行樂地 其他 인적이 많은 곳 : 300~500 m 間隔으로 設置

② 人跡이 드문곳 : 1,000 m 範圍內 적당한 距離 다만, 當該地域 地形의 特殊性(절벽 등) 으로 사람이 쉽게 接近하기 困難한 곳은 3,000 m 距離 範圍內에서 適當한 間隔으로 設置

나) 標柱

① 上水保護區域 境界에 따라 平地部는 150~200 m 間隔(但, 聚落地는 50~100 m 間隔), 山地部는 300~500 m 間隔으로 設置한다.

② 主要 道路, 鐵道, 河川등을 橫斷하는 경우에는 그 施設의 兩側 橫斷地點에 設置한다.

3) 管轄 市長, 郡守는 別紙 第6號 書式에 의한 上水保護區域標識台帳을 作成 備置하여야 하며, 標識가 亡失, 破損, 顛倒 또는 位置가 離脫되는 일이 없도록 補修 管理하여야 한다.

라. 取水施設에 대한 保安施設의 設置

取水施設 주위에는 施設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必要한 距離를 確保하여 올타리를 設置하고, 資料裝置를 하는등 사람과 家畜이 함부로 接近하지 못하도록 保安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6. 其他

가. (施行日) : 이 指針은 1988.9.1 부터 施行한다.

나. 經過措置

1) 이 指針 施行前에 指定된 上水保護區域은 本指針에 의거, 指定된 것으로 보고, 各種 標識板은 새로 製作時까지 存置한다.

2) 이 指針 施行前에 上水保護區域으로서 地籍公告가 되지 않는 上水保護區域에 대하여는 1989.12.31 까지 地籍을 公告하고 地籍圖面을 一般에 供覽하여야 한다.

(別紙 第1號, 第2-1號, 第2-2號, 第3號, 第4號, 第5-1號, 第5-2號, 第6號 및 第7號 書式은 省略.)